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0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전진속·이개호·남인순
문금주·백혜련·정준호
임미애·이수진·손솔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으며, 예산·조직·인력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지속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이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연구기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민간 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진실 규명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한다.

⑤ 제4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 및 전시·기념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6.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⑦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학술·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관리·운

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한 자에게는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박물관·역사관·전시관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5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재단의 설립 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11조의5제6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5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진실 규명,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p> <p><u>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p><u>④ 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한다.</u></p> <p><u>⑤ 제4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u></p>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 및 전시·기념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6.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학술·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한 자에게는 자료의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박물관·역사관·전시관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